

제31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31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다음

- 집회일시 : 2025년 10월 20일(월) 10:00
※ 기간 : 2025. 10. 20.(월) ~ 10. 24.(금) / 5일간
 - 집회장소 : 예산군의회 본회의장

2025년 10월 10일

예산군의회의장 장순

